

Korean Tax Update

November 2020, Issue 77

[조세뉴스]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전문보기]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함.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가되,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힘.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전문보기]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임.

[판례]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 두 51174 판결

-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을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님.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 두 36908 판결

-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고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义务的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5. 5. 11.인데, 이 사건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로부터 5년 이 경과된 2015. 4. 17.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고,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근거 세목이 '소득세'인 1차 징수처분과 근거 세목이 '법인세'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1차 징수처분은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인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1차 징수처분과 이 사건 징수권의 근거 세목이 달라 동일한 국세징수권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응소행위로서 이 사건 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징수권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1차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义务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대법원 95누4056),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심판례]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기각)

조심 2020 전 2141, 2020. 10. 19.

- 이익준비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쟁점규정)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나, 적립범위를 1/10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까지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무(義務)”의 사전적 개념에 비추어 쟁점규정을 해석하더라도, 쟁점규정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라는 규정이기는 하나, 1/10까지는 의무자로 하여금 예외 없는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적립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반면, 1/10을 초과하는 분은 적립의 무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이를 의무적립금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내유보소득을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되, 그 중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 등을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특정적립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의무적립금에 해당함이 법령해석상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익금의 1/10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의무적립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감채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근거는 2020.3.13. 창설적으로 신설되어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채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한 것도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미환류소득 산정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납부·환급된 법인세등의 귀속 사업연도가 법인세 계산 대상 사업연도인지 추가납부·환급된 사업연도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0 부 0164, 2020. 10. 22.

-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기업소득이라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통상적으로 12월말법인의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등을 납부한 다음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이 증액경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증가된 것이므로 이를 납부·환급된 사업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가납부 및 환급된 법인세 등을 2015·2016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 (취소)

조심 2020 서 1923, 2020. 10. 27.

- 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 근거는 2014.9.26.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신설되어 2018.2.13. 제19조 제19호의2로 이관되었으며, 이관되면서 종전 제4항(잉여금처분 후 손금산입)은 삭제되었는바, 종전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임직원이 쟁점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법인이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원이 없어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쟁점차익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 또한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종전규정이 창설적으로 도입되어 쟁점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점, 장부상 주식보상비로 계상된 금액을 잉여금처분으로 보아 손금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확한 근거가 없음은 물론, 쟁점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잉여금을 처분하더라도 처분된 잉여금의 상대계정 또한 자산·부채가 아닌 자본이어서 잉여금처분으로 감소된 자본이 동시에 다시 증가하게 되어 회계상·실질상 유의미한 결과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종전규정이 쟁점규정으로 이관되면서 잉여금처분의 근거가 삭제되어 2018년 이후 행사분부터는 잉여금처분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 할 것인데 이 건 쟁점권리는 2018년 이후 행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익에 대한 손금을 주식보상비 계상액으로 제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0 서 1317, 2020. 11. 2.

-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매출을 증대 또는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활동에 대한 비용으로서 지적재산권 사용 및 독점적 공급권에 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계약을 통해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고, 쟁점광고비와 별개로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판매법인들은 해외주주사가 제공한 광고 및 판촉물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광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비용 중 해외주주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배분대상 비용을 국가별 매출액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3서857 등).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 임차공장을 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지 0668, 2020. 11. 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9.2.8. 주식회사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19.11.18.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공장 이전을 위하여 사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부득이 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서 3341, 2020. 11. 6.

-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쟁점상증법조항)에서는 자산의 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쟁점법인법조항)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법조항에서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 등의 창출 등을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감가상각의 대상인 고정자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라는 것으로, 쟁점외법인은 이에 따라 물적분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인 쟁점개발비를 포함한 쟁점외사업부의 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상증법조항이 이처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적분할 후의 쟁점주식 양도시에는 쟁점상증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개발비 상당액을 포함한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원천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예규]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중고품 매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부 및 투자 제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5, 2020. 9. 21.

-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해당 자산을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 100 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자산은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 25 조 제 1 항 제 6 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서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 25 조 제 1 항 제 6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 2020. 9. 24.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 52 조 제 2 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사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업도시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후 현행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22, 2020. 10. 13.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18 조에서 '2020 년 1 월 1 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 년 1 월 1 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 75 조의 2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일몰기한을 당초 2019.12.31.에서 2022.12.31.까지로 3 년간 연장하면서 2020 년 1 월 1 일 전

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2019년까지 적용받았다면 현행 감면규정 적용이 불가함.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 종료로 인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 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 10. 19.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 만 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 계산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79, 2020. 10. 19.

-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 조 제 3 항 제 4 호의 “직전 3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 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에서 직전 3 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 10. 26.

-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 제 9 호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 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 년 1 월 1 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주배정을 포기함으로써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의 2 제 1 항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2252, 2020. 10. 27.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 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3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20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